

「구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
주민지원기금 설치·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4월 7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4월 8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4월 16일

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환경교통국장 김 태 영

나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1) 지원사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제1항, 별표 3)
- 2) 용어 정비(안 제8조~제11조, 제15조, 제16조, 제18조)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
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2)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3) 합 의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
- 4) 기 타: 구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통과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,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의 종류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의 종류를 구체화함으로써 기금 사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본 기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재원인 만큼 관행적인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, 주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음.

- 또한, 주민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경우 사업 운영 및 기금 정산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 교육 및 회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